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6479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64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가단521574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15. 7. 10.

판결 선고 2015. 8. 21.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가단521574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4. 3. 5. 접수 제81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에 '올나 제6호증, 을나 제7, 8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를 '을나 제6 내지 9,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기재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축탁 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및 4행의 '인수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어 피고 B이 실제로 대물변제 받는 채권액은 매매대금의 약 25%에 불과한 점' 다음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총 466,643,670원이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406,222,000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평가하여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 중 재무구조가 건실한 편에 속하는 'D'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영상 판단을 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영

판사임효미

판사남현

별지